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1.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 해주지 않은 행위	○ 법 제116조제1항·제4조 제5항	1,000	가.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이 투표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 하지 않은 경우 : 1,000 나.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이 투표시간을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때에 투표시간을 보장 하지 않은 경우 : 500
2.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사전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2항·제42조·제49조(「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제148조 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	500	500
3.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려는 때에 방송시설의 명칭·이용 일시·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3항제1호·제31조제4항	300	가. 방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신고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 100
4.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인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국민 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3항제2호·제85조제4항	300	가. 매회 : 300
5. 해당 정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3항제3호·제87조제2항	300	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이행기간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가산액 : 50
6.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3항제4호·제88조제4항	300	가. 매회 : 300
7. 국민투표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4항제1호	200	가. 신고·제출 후 비로소 그 다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 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그 다음의 행위 전까지 신고·제출한 때 : 30 ② 신고·제출 없이 그 다음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행위를 한 때 : 해당 벌칙에 따름 나. 신고·제출로 끝나는 경우 그 의무를 게을리한 때 : 30 (다만, 신고·제출의무 불이행시 벌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벌칙에 따름)
8.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4항제2호 · 제 42 조 · 제 49 조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3항·제147조제10항·제174조제3항)	200	200
9.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정당 등으로부터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116조제4항제3호 · 제42조(「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제4항)	200	가. 신고된 일시와 다른 일시에 기표소를 설치한 때 : 30 나.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100 다. 기표소 설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설치하지 아니한 때 : 200
10.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4항제4호 · 제42조(「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	200	200
11.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5항제1호 · 제41조제3항·제45조제2항·제58조제2항	100	가. 참관거부 : 100 나. 참관태대 : 50
12.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5항제2호 · 제 42 조 · 제 49 조 (「공직선거법」 제 147조제9항·제148조제3항·제174조제2항)	100	가. 직무거부·유기 : 100 나. 직무태대 : 50
13. 국민투표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6조제5항제3호 · 제85조제4항	100	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